

의안번호	2213925
의 퇴 인	정일영 의원
회 답 일	2024. 11. 12.
추 계 번호	25F58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인상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일괄공제를 인상하는 등의 경우, 상속세는 2026년 2,733억원, 2030년 5,46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 4,594억원(연평균 4,9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일괄공제 인상 외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동 추계에서 제외
 - 이를 고려하면, 동 추계의 세수 감소효과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 인상(안 제19조제4항)	추	정	곤	란			
상속세 일괄공제 인상 (안 제21조제1항)	-2,733	-5,465	-5,465	-5,465	-5,465	-24,594	-4,919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 단서)	추	정	곤	란			
합 계	-2,733	-5,465	-5,465	-5,465	-5,465	-24,594	-4,919

주: 2026년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감안하여 6개월분만 반영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제4항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 인상 -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10억원	
2	안 제21조제1항 (일괄공제)	○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상 - 일괄공제 금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7억원	

3	안 제24조 단서 (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의 상향조정 - 상속세 과세가액: (현행) 5억원 초과→(개정안) 7억원 초과	
4	안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 -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현행) 5억원 이하 → (개정안) 7억원 이하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일괄 공제 상향조정 시 상속세의 세수 변화가 없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제4항 (배우자 상속공제)	×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향후 배우자의 재산상속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 기초자료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2	안 제21조제1항 (일괄공제)	○	
3	안 제24조 단서 (공제 적용의 한도)	×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별 상속공제액 및 유증 등 상속재산 차감 항목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4	안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	○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상속세의 세수 변화가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단, 2026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감안하여 6개월분만 반영

- 향후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일괄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93.3%)을 반영하여 추정된 피상속인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의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실효세율은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
- 이외에도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 인상과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
 - 향후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개정안 10억원)을 적용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의 재산상속 여부 및 상속재산 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향후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액의 일정금액을 초과(현행 5억원 초과, 개정안 7억원 초과)한 경우 적용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별 상속공제액 및 유증 등 상속재산 차감 항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상속공제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현행 5억원 이하, 개정안 7억원 이하)은 동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상속세 증감 없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①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②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일괄공제 적용을 받음
 - 배우자공제의 경우 일괄공제와 병행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액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 일괄공제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7억원

나. 추계방법

- 향후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향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추정치에 공제율 인상을 반영하여 일괄공제액 증가분을 추정한 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향후 일괄공제액 적용대상 피상속인 추정치 및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일괄공제 적용대상 분포,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실효세율은 최근 5년(2020~2024년)의 평균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

(1)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추정

-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현황) 최근 5년(2020~2024년)간 일괄공제 적용대상인 피상속인수의 추이, 전체 피상속인수 및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대비 비중,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피상속인수는 연평균 1.4만명으로,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연평균 1.6만명)의 93.3% 수준
 - 한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전체 피상속인수(연평균 33.9만명) 대비 4.8% 수준

[표 2] 전체 피상속인수와 과세대상 및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추이: 2020~2024년
(단위: 명, %)

피상속인수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20~’24년)
전체 피상속인수(A)	351,648	344,184	348,159	292,545	358,979	339,103
-과세대상(B)	10,181	12,749	15,760	19,944	21,193	16,173
(비중, B/A)	(2.9)	(3.7)	(4.5)	(6.8)	(5.9)	(4.8)
-일괄공제 적용대상(C)	9,507	11,883	14,717	18,609	19,805	14,904
(비중, C/B)	(93.4)	(93.2)	(93.4)	(93.3)	(93.5)	(93.3)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일괄공제 피상속인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연평균 일괄공제 피상속인수 비율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 28.7%에서 500억원 초과 0.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및 비율
(단위: 명, %)

상속재산가액구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비율 (‘20~’24년)
10억원 이하	2,878 (30.3)	3,363 (28.3)	4,149 (28.2)	5,219 (28.0)	5,684 (28.7)	28.7
20억원 이하	4,107 (43.2)	5,247 (43.5)	6,506 (44.2)	7,838 (42.1)	8,207 (41.4)	43.0
30억원 이하	1,190 (12.5)	1,558 (13.1)	1,924 (13.1)	2,574 (13.8)	2,820 (14.2)	13.4
40억원 이하	477 (5.0)	628 (5.3)	774 (5.3)	1,189 (6.4)	1,244 (6.3)	5.6
50억원 이하	240 (2.5)	336 (2.9)	422 (2.8)	602 (3.2)	635 (3.2)	2.9
100억원 이하	415 (4.4)	491 (4.2)	633 (4.1)	783 (4.2)	784 (4.0)	4.2
500억원 이하	188 (2.0)	241 (2.0)	288 (2.0)	369 (2.0)	399 (2.0)	2.0
500억원 초과	12 (0.1)	19 (0.2)	21 (0.2)	35 (0.2)	32 (0.2)	0.2
합계	9,507 (100.0)	11,883 (100.0)	14,717 (100.0)	18,609 (100.0)	19,805 (100.0)	100.0

주: ()는 전체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 수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수 비율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추정) 향후 일괄공제 적용대상인 피상속인수와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 향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와 과세대상 대비 일괄공제 적용대상의 연평균 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연도별로 14,904명으로 추정

[표 4] 최근 5년간 연평균 과세대상 및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단위: 명, %)

	과세대상 피상속인수(A)	과세대상/ 일괄공제 적용대상(B)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A×B)
연평균 수준('20~'24년)	16,173	93.3	14,904

- 향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의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분포는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의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

[표 5] 향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추정치

(단위: %, 명)

상속재산 가액구간	피상속인수 비중 ('20~'24년 연평균, A)	일괄공제 적용대상 추정치 (B=A×14,904)
10억원 이하	28.7	4,278
20억원 이하	43.0	6,412
30억원 이하	13.4	1,990
40억원 이하	5.6	842
50억원 이하	2.9	437
100억원 이하	4.2	625
500억원 이하	2.0	297
500억원 초과	0.2	23
합계	100.0	14,904

(2)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실효세율의 추정

□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실효세율은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10.8%에서 500억원 초과 43.1%로 나타남

[표 6]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실효세율 추이

(단위: 억원, %)

상속재산 가액구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실효세율 (‘20~’24년)
10억원 이하	과세표준(A)	5,796	7,092	8,794	10,748	11,868	10.6
	결정세액(B)	586	733	973	1,144	1,264	
	실효세율(B/A)	10.1	10.3	11.1	10.6	10.7	
20억원 이하	과세표준(A)	18,163	24,060	29,312	35,192	36,869	17.3
	결정세액(B)	3,087	4,186	5,134	6,122	6,397	
	실효세율(B/A)	17.0	17.4	17.5	17.4	17.3	
30억원 이하	과세표준(A)	13,089	17,512	21,315	28,858	31,167	23.5
	결정세액(B)	3,019	4,071	5,105	6,754	7,454	
	실효세율(B/A)	23.1	23.2	24.0	23.4	23.9	
40억원 이하	과세표준(A)	8,405	11,538	14,398	21,632	22,646	27.0
	결정세액(B)	2,200	3,112	3,926	5,903	6,147	
	실효세율(B/A)	26.2	27.0	27.3	27.3	27.1	
50억원 이하	과세표준(A)	5,841	8,400	10,558	15,424	15,559	29.6
	결정세액(B)	1,725	2,446	3,199	4,622	4,559	
	실효세율(B/A)	29.5	29.1	30.3	30.0	29.3	
100억원 이하	과세표준(A)	17,290	21,070	26,975	33,984	32,983	34.4
	결정세액(B)	5,792	7,375	9,323	11,735	11,343	
	실효세율(B/A)	33.5	35.0	34.6	34.5	34.4	
500억원 이하	과세표준(A)	26,036	33,592	38,323	51,370	54,384	40.3
	결정세액(B)	10,485	13,727	15,618	20,647	21,536	
	실효세율(B/A)	40.3	40.9	40.8	40.2	39.6	
500억원 초과	과세표준(A)	33,103	31,267	314,285	142,281	55,239	44.5
	결정세액(B)	15,128	12,834	148,957	65,870	23,150	
	실효세율(B/A)	45.7	41.0	47.4	46.3	41.9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일괄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 향후 상속세 일괄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일괄공제 증가분을 추정한 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일괄공제 증가분은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일괄공제 적용 대상 피상속인수 추정치에 개정안에 따른 일괄공제 증가액(2억원)을 반영하여 추정
 - 향후 상속재산가액 구간별 일괄공제 증가분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세수 감소효과는 10억원 이하 903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21억원 등 총 5,465억원으로 추계됨
 - 단, 2026년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감안하여 6개월분만 반영

[표 7] 향후 연도별 세수효과 추정치

상속재산 가액구간	일괄공제 적용대상 추정치 (A, 명)	실효세율 (B, %)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A×2]×B, 억원)
10억원 이하	4,278	10.6	903
20억원 이하	6,412	17.3	2,223
30억원 이하	1,990	23.5	936
40억원 이하	842	27.0	454
50억원 이하	437	29.6	259
100억원 이하	625	34.4	430
500억원 이하	297	40.3	240
500억원 초과	23	44.5	21
합계	14,904	—	5,465

(4)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일괄공제를 인상하는 등의 경우, 상속세는 2026년 2,733억원, 2030년 5,46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 4,594억원(연평균 4,9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일괄공제 인상 외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동 추계에서 제외
 - 이를 고려하면, 동 추계의 세수 감소효과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 인상(안 제19조제4항)	추	정	곤	란			
상속세 일괄공제 인상 (안 제21조제1항)	-2,733	-5,465	-5,465	-5,465	-5,465	-24,594	-4,919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 조정(안 제24조 단서)	추	정	곤	란			
합 계	-2,733	-5,465	-5,465	-5,465	-5,465	-24,594	-4,919

주: 2026년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감안하여 6개월분만 반영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